

제6절 음료

1. 통관제도

가. 관세율

HSJ	품명	관세율	
		기본	WTO협정
2201.10.000	광수 및 탄산수	3.2%	3.0%
2202.10.100	물(광수 및 탄산수를 포함)/가당	22.4%	13.4%
2202.10.200	물(광수 및 탄산수를 포함)/설탕 이외의 감미료 또는 향미료 첨가	16.0%	9.6%
2202.90.100	물 이외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/가당	22.4%	13.4%
2202.90.200	물 이외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/무가당	16.0%	9.6%

참고 : 경제연휴협정(EPA) 체결국의 관세율 현황 (2012)

HSJ	싱가폴	멕시코	말레이시아	칠레	태국	인도네시아	브루나이	아세안	필리핀	스위스	베트남	인도	페루
2201.10.000													
2202.10.100		3.6%			6.1%			9.6%	7.3%			11.0%	11.0%
2202.10.200	2.4%	무세	1.2%	2.4%	2.4%	3.6%	3.6%	3.6%	3.6%	6.1%	4.8%	7.9%	7.2%
2202.90.100		무세			6.1%			9.6%	7.3%	8.5%		11.0%	10.1%
2202.90.200	2.4%	무세	1.2%	2.4%	무세	3.6%	3.6%	3.6%	3.6%	3.2%	4.8%	7.9%	7.2%

나. 통관절차

- 생수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공식품보다는 다소 까다로운 서류심사 절차가 필요함
- 한국내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증명서와 제조공정표, 성분분석표등을 구비하여 일본 수입예정항 관할 검역소에서 사전 심사를 득한 후 별도 샘플통관을 실시하여 세관검사를 받으면 통관이 완료됨

- 신규수입 이후 재수입시에는 별도 검사 없이 동일한 검사증명서로 1년내 유효함
- 과거의 사례를 보면 위생검역 통관에 약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일본의 생수 부족한 상황을 감안 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신속히 통관 검사를 진행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완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
- 구비서류
 -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검역소에 사전심사를 신청 후 생수 제조기준에 적합 판정이 나오면, 제품의 일반세균검사(살균, 제균방법에 따라서는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) 및 성분규격 검사를 실시
 - 용기에 대해서 재질 일반규격, 개별규격 및 용도별 규격 검사가 필요함
 - ① 브랜드명, 제조공장 명칭 및 소재지
 - ② 원수 분석결과서(수질기준은 별첨)
 - 한국내 분석기관(민간, 공적기관 여부 불문)에서 검사한 실적을 인정함
 - 업체내 자체 분석검사소에서 한 것도 인정
 - 원수 분석을 실시한 검사기관 명칭, 소재지 및 공적검사기관인지 민간검사기관인지등에 대해 기재
 - ③ 용기 세정방법, 살균방법, 용기 사용전까지 보관방법 및 리사이클 유무
 - ④ 제조공정표
 - 원천에서 물 채수하여 주입까지의 상세한 공정을 플로차트로 기재
 - ⑤ 원천의 지리적위치, 환경(공장 및 농지 유무등), 구조, 채수방법 및 제조공장까지의 수송방법
 - ⑥ 이산화탄소 주입 유무
 - 주입하는 경우, 20도에서의 용기내 이산화탄소 압력을 Kpa단위로 표시
 - ⑦ 살균, 제균 유무
 - 살균, 제균을 실시하는 경우,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기 단위로 표기
 - 가열살균 : 중심부 온도 및 온도 유지 시간
 - 자외선살균 : 조사선량($uW \cdot sec/cm^2$), 투과율(%)
 - 오존살균 : 오존농도(mg/l), 농도를 유지한 시간(min)
 - 여과 : 필터의 직경(u)

- 살균, 제균을 하지 않는 경우
 - 제조방법에 관한 상세한 조사 및 원수의 미생물학적 검사가 필요하게 됨.(단, EU국가로부터 수입에 관해서는 제외)

2. 검역제도

가. 위생 검토사항

〈제조공정표와 연계하여 제출 필요〉

- 제균에서 용기 주입까지의 위생관리
 - 예) 외기와 차단된 클린룸에서 음압되어 24시간 체제로 관리되고 있음
- 필터 정비 상황
 - 일정한 압력이 필터에 걸리 시점(압력 단위등을 포함)에 교환
매일 또는 주간단위, 월간 등, 1일간 용기주입 종료시점 또는 작업 개시시 교환
- 필터 및 UV살균, 오존 살균을 설정한 근거
 - 예) 필터 사이즈, UV살균, 오존 살균을 설정한 이유의 필터등의 효력 설명
 - 제균 대상 물중에 존재하는 미생물명(세균명을 학명으로 기재)

Ⅰ 수질검사 기준 Ⅰ

제1란	제2란
일반세균 Totalcolonies	1ml의 검수에서 형성된 집락수가 100이하일것
대장균군 Coliform Group	미검출
카드뮴 Cadmium	0.01mg/l 이하
수은 Mercury	0.0005mg/l 이하
세렌 Selenium	0.01mg/l 이하
납 Lead	0.05mg/l 이하
바륨 Barium	1mg/l 이하
비소 Arsenic	0.05mg/l 이하
6가 크롬 Hexavalent Chromium	0.05mg/l 이하
시안 Cyanide	0.01mg/l 이하

제1란	제2란
초산성질소 및 아초산성 질소 Nitrate Nitrogen and Nitrite Nitrogen	10mg/l 이하
불소 Fluoride	2mg/l 이하
붕소 Boron	붕소산으로서 30mg/l 이하
아연 Zinc	5mg/l 이하
동 Copper	1mg/l 이하
망간 Manganese	2mg/l 이하
유기물등 Potassium Permanganate Consumed	과 망간산 칼륨 소비량으로서 12mg/l 이하
유화물 Sulfide	유화수소로서 0.05mg/l 이하

나. 청량음료 수입수속

- 과실 또는 야채의 주스는 HS2009입니다만, 일부 종량 가세와의 병용이나 오렌지주스에는 멕시코 EPA의 관세 할당범위가 있는 등 세분이 복잡한 품목도 있으니 주의필요. 생수는 2201, 감미료나 향미료를 더한 물은 2202(알코올분 0.5% 이상의 주스도 제22류)로 분류됨

다. 관련 법규

□ 식품위생법

- 「청량 음료수」(생수류, 냉동과실음료 등)는 동 법에 근거하는 후생성 고시 제 370호「식품,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」에 대해 성분규격·제조기준·보존 기준의 규정이 있어 이것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. 「분말 청량음료」도 규격기준이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함
- 일본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나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물질(보존료, 착색료등)의 함유에 주의를 필요로 함. 생 주스 등은 잔류농약 기준(포지티브 리스트 제도)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
- 또한 판매시 알레르기 물질 표시제도에 대해 특정 원재료나 이것에 준하는 표시 추천 품목(오렌지, 키위, 바나나, 복숭아, 사과 등)을 포함한 경우는 적절한 표시가 필요함

□ 농림 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(JAS법)

- 동법에 근거하는 가공식품 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일괄표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 수입품에는 원산지(국가)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. 음료의 경우 「과실음료」 「탄산음료」 「두유류」 「당근주스 및 당근 믹스주스」에 각각 개별의 품질표시 기준의 규정도 있음. 상기 4품목과 「사과 스트레이트 퓨어 주스」에는 임의 JAS 규격도 정해져 있음.
- 또한 「유기」 「오가닉」 등의 표시를 행하는 경우는 유기 JAS 규격에의 적합이 필요함

□ 건강증진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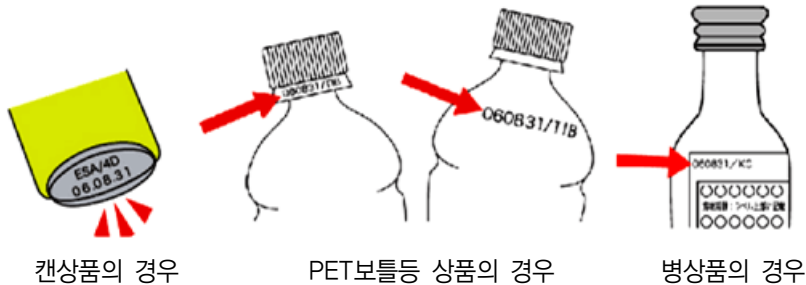
- 영양성분이나 열량에 관한 표시를 실시하고 싶은 경우는 동법에 근거하는 「영양 표시기준」에 따른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. 또한 혈압을 유지하는 등 생리학 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특정의 보건 용도에 적절한 것을 표시하고 싶은 경우에는 소비자청에 의한 「특정보건용식품」의 인가수속이 필요함
- 그 외의 일본국내 관련법은 관세정률법/관세 잠정조치법(관세할당),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(경품표시법)/공정경쟁규약, 자원유효이용촉진법/용기 포장 리사이클법등이 있음

3. 표기사항

□ 청량음료 상미기한 표시

- 상미기한이란, 개봉하고 앓은 상태에서 표시되고 있는 보존방법에 따라서 보존했을 때에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고 있음. 상미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마실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기한이 지나면 서서히 풍미가 떨어져 가기 때문에 기한 내에 마시는 것을 권장
- 한편, 「소비기한」이란 「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」을 말하는 것으로 개봉하지 앓은 상태에서 표시되고 있는 보존방법에 따라서 보존했을 때에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나타내고 있음. 장기간 보존할 수 없는 식품에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

■ 표시 사례 ■



4. 기타사항(수출확대 방안 등)

가. 한국산 수입규모 및 점유율

- 한국산의 음료의 전체 수입규모는 3, 658백만엔으로 이중에서 생수가 1,504백만엔, 청량음료가 1,027백만엔, 혼합음료가 1,127백만엔으로 나타남
- 한국산은 생수에서 5.31%, 청량음료에서 17.45%, 혼합음료에서 9.41%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

나. 한국산 선호도

- '11년 주 수출시장인 일본에서 대상의 마시는 홍초가 빅히트하여 전년대비 5,141.5%증가한 10백만불 수출 달성('10년은 204천불)
- 『마시는 홍초』는 일본 니케 Trendy의 『일본내 2011년 히트상품 베스트 30』에서 18위를 차지, 단위 품목에서 2위, 마시는 식초 부분에서 1위 차지
- 지난해 8월부터 K-POP 스타인 '카라'를 광고모델로 기용하여 감성 마케팅을 전개하여 폭발적인 인지도 상승
- 최대 수출국인 일본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판촉활동 및 홍보로 계속하여 성장할 것으로 전망